

법령입안심사기준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효력이 상실된 규정을 다시 규정하기 위한 개정 방식 검토

글. 법제처 법령정비담당관실 유태동 서기관



1. 검토 배경

- 법령 규정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해당 규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동일한 사항을 다시 규정하기 위한 개정방식 검토.

검토 대상 :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지방재정법 (2015. 12. 4. 대통령령 2669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1조(일상경비 등의 범위) ① 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자금을 교부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4. (생 략)

15. 민간이전경비, 보상금, 용역비 및 물품구입비

② (생 략)

대통령령 제21260호 지방재정법 시행령 부칙

제2조(유효기간) 제91조제1항제15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0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유효기간이 경과한 2015. 11.경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전부개정방식) 추진

현 행	사 전 접 수 안
제91조(일상경비 등의 범위) ①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자금을 교부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91조(일상경비 등의 범위) ①
1. ~ 14. (생 략)
15. 민간이전경비, 보상금, 용역비 및 물품구입비	1. ~ 14. (현행과 같음) 15. 민간이전경비, 보상금, 용역비 및 물품구입비

2. 입법례

* 유효기간이 지난 조문의 효력을 되살리기 위한 개정방식에 대하여, 입법례는 전부개정방식을 취하기도 하고 신설방식을 취하기도 함

가. 전부개정방식으로 개정한 경우

〈대통령령 제18822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05. 5. 7. 공포, 2005. 6. 8. 시행)〉

제13조제1항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88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8822호로 개정)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 략) 1의2.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보증(입찰보증을 제외한다)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할 것 가. ~ 다. (생 략)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①..... 1. (생 략) 1의2.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보증(입찰보증을 제외한다)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할 것 가. ~ 다. (원쪽과 같음)
대통령령 제17347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01. 8. 25. 공포 · 시행)〉	제13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발급하는 보증기능금액확인서[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보증(입찰보증을 제외한다)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할 것 가. ~ 다. (생 략)

제13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발급하는 보증기능금액확인서[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보증(입찰보증을 제외한다)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할 것

가. ~ 다. (생 략)

부 칙

②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및 사무실에 관한 건설업 등록기준의 유효기간) 보증가능금액확인서에 관한 제13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 및 사무실에 관한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법령입안심사기준

나. 신설 방식으로 개정한 경우

〈법률 제6591호(2002. 1. 14.) 민법증개정법률(2002. 1. 4.공포 · 시행)〉

제1019조제2항 중 “전향”을 “재1향”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26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민법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민법 (법률 제6591호로 개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1. (생 락) <u>〈신 설〉</u>	1. (현행과 같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현행과 같음)
3. (생 락)	

〈구 민법(2002. 1. 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 민법 제1026조제2호 위헌제청(96헌기22, 1998.8.27)

1. 민법 제1026조제2호(1958. 2. 22. 법률 제471호)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 위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1999. 12. 31.까지 개정하지 아니하면 2000. 1. 1.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 위헌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된 법률조항은 형식적으로도 조문이 없어진 것으로 보아 해당 조항의 삭제 없이 「민법」 제1026조제2호로 신설한 사례임.



3. 법령 입안 · 심사 기준의 입장

개별 조항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조항을 다시 신설하는 방식을 취하게 되면 형태만 남아 있는 규정이 있어 이를 삭제하고 다시 신설하는 것은 아무래도 어색하므로, i) 해당 조항을 전부개정하는 방식과 ii) 기존 규정을 삭제하고 새로운 규정은 가지번호를 사용하여 다른 조문으로 신설하는 방식을 사용하도록 함(법령 입안 · 심사 기준 531쪽)

4. 검토

가. 유효기간이 경과한 조문의 효력에 관한 기준의 논의 내용

1) 조문이 없어진 것으로 보는 견해

- 한시법의 경우 법의 유효기간이 도과되면 법 자체에 대한 별도의 폐지 조치가 없어도 법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과 같이,
 - 개별 조항인 경우에도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동일하게 부칙의 규제 존속기한이 도과된 경우 관련 본칙 규정도 조문이 없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른 추후 법적 개정이나 보완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갖는 기속력에 의한 것인 반면에,
 - 유효기한 등의 도과로 인한 개별 조항 효력 상실의 경우에는 입법자의 의지에 의하여 직접 법규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차이가 있음.

2) 효력만이 상실되고 조문은 남아있는 것으로 보는 견해

- 부칙의 유효기간 도과로 효력이 상실되는 관련 본칙 규정은
 - 해당 본칙규정을 삭제하지 않는 이상 법령 자체로는 존재하고 있으므로, 조문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효력만이 상실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다수의 입법례에서 유효기간이나 존속기한 등이 도과되면 해당 조문이 없어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아, 추후 법개정 시 정비차원에서 삭제하고 있음

법령입안심사기준

3) 결론 : 효력만 상실되고 조문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처리

- 논리적으로는 유효기간이 도과하면 효력이 상실된 규정이므로, 별도의 삭제 조치는 불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나,
- 입법기술상으로는 법령 자체에 본칙 규정이 존재하므로, 정비 차원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처리할 필요.

* 「법령 입안·심사 기준」에서도 유효기간이 경과한 조문에 대하여 조문은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전부개정' 방식이나 '기존 조문 삭제 후 가지번호 조문 신설' 방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나.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효력이 상실된 규정을 다시 규정하기 위한 개정방식 분석

1) 전부개정 방식의 장단점

- (장점) 개정방식이 간편함
- (단점) ① 신·구조문대비표상 “a”를 “a”로 개정하도록 표시되어 어색하고, ② 전부개정 방식이긴 하나 기존 규정과 조문번호 및 그 내용이 동일하므로, 추후에 법령의 개정 경과 및 연혁을 파악하기 어려우며, ③ 유효기간이 만료된 조문의 종전 부칙을 개정조문의 부칙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고, ④ 이런 이유로 유효기간이 만료된 조문의 종전 부칙을 삭제할 경우 개정 경과를 더욱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2) 기존규정 삭제 후 가지번호 조문 신설방식의 장단점

- (장점) 기존규정을 삭제하고 가지번호를 신설함으로 인해 개정의 경과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삭제된 기존 규정에 관한 부칙과의 관계에 대해 혼란이 없게 됨
- (단점) 동일한 내용을 삭제 후 신설함으로 인해 법조문이 복잡해지고, 신설된 내용이 종전 제도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게 됨



다. 검토 결과

- 전부개정 방식이 개정문 또는 신·구조문대비표 작성이 간소한 측면은 있으나, 흡수개정 방식을 취하는 우리 법체계상 개정 경과를 쉽게 파악하기 어렵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조문의 종전 부칙을 개정조문의 부칙으로 오해하여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 법령의 명확성 및 이해도 제고 차원에서 기존규정 후 가지번호 조문 신설 방식으로 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별첨 참조).



[별첨]

대통령령 제 호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제1항제1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의2. 민간이전경비, 보상금, 용역비 및 물품구입비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1조(일상경비 등의 범위) ①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상경비출납 원에게 지금을 교부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91조(일상경비 등의 범위) ①
1. ~ 14. (생 략)
15. 민간이전경비, 보상금, 용역비 및 물품구입비
〈신 설〉	1. ~ 14. (생 략) 〈삭제〉 15의2. 민간이전경비, 보상금, 용역비 및 물품구입비